

□ 대관 준수사항

※ 해당규정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대관규정에 근거함.

대관신청의 제한(제4조의2) / 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(제9조)

- 대관 신청의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 목적 및 일정 등 고려하여 승인
 -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
 -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
 - 센터 시설·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
 -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
 -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법률적 판단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, 센터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생각되는 공연이나 행사
 - **✓ 제9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단체 및 개인의 신청**

✓ 제9조(대관의 취소 및 자격정지 등)

-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- **(자격정지 1년)**
 -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
 -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때
 - **(자격정지 6개월)**
 -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(3회 초과 시)
 -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(3회 초과 시)
 - **(자격정지 3개월)**
 - 대관 취소 및 변경한 때(5회 초과 시)
 - ※ 단,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,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외
- 위의 사용자 미준수 사항으로 자격정지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기산한다.

대관료(제6조)

- 대관료 납부기한
 - (정기대관) 대관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액 납부
 - **(수시대관)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액 납부**
- 대관료 반환조건
 - (정기대관)
 -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% 반환
 - 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50% 반환 (그 이후 취소 시 반환 불가)
 - **(수시대관)**
 - **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100% 반환**
 - **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취소 시 반환 불가**